

제346회 임시회

2016. 3. 4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임병은 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2월 24일
-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4일

3. 개정이유

-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사업의 확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여, 민·관 거버넌스 차원의 운영 효과성을 도모하고,
- 해당 법률의 개정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띄어쓰기 등에 따른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함.

4. 주요내용

가. 운영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 (안 제6조의2 제1항)

- 자문역할 → 자문 및 심의 역할

나.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증원 (안 제6조의2 제2항)

- 10명 이내 → 15명 이내

다.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에 대해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준용 (안 제6조의2 제4항)

- 여성위원비율 30%이상 →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

5. 검토의견

- 주요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검토함.
- 본 개정안 제6조의2제2항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함) 운영의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를 증원하려는 것으로,
 - 진흥원은 기존에 2개 센터(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활동진흥센터)를 운영해 오던 중, 2014년 하반기부터 ‘청소년성문화센터’를 추가 설치·운영해오고 있으며,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청소년 성상담(이동형) 업무를 추가 수행하게 되는 등 담당 기능 및 직무가 확대된 바, 운영위원회 위원 중 민간 위촉직 위원을 기존 7명 이내에서 5명 증원한 12명 이내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.
 - ※ 현행 : 위촉직 위원 7명(당연직 3명) ⇒ 개정 후 : 위촉직 위원 12명(당연직 3명)
 - 위촉직 위원의 증원은 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, 추가된 기능 및 업무에 부합한 전문가 및 현장 인사 확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
- 또한, 안제6조의2제4항은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을
 - 기존 ‘여성위원비율 30%이상 되도록 노력’에서 ‘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~’으로 개정하고,
 - 동법 부칙 제2조(“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)에 따라 본 개정안 부칙에 안제6조의2제4항에 대해 2017. 12.31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적용 특례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, 상위법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함.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및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법령 위임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, 내용적 측면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됨.